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498호 2019. 9. 25. (수)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1029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
- 정선군 공고 제2019-1038호 정선군 고령운전자등 교통사고 예방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11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1029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9월 23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선군 군계획 조례 반영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공고·열람 사항 개정(안 제8조)
 - 시행규칙 제3조 개정(1항 신설 등)에 따라 군계획 조례 상 재공고·열람 대상에 개정사항 반영
- 개발행위 심의대상 명확화(안 제28조)
 - 창고시설과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의 구분으로 개발행위 심의대상 명확화
- 용도지구 세분 삭제(안 제4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따라 용도지구 세분은 강원도 소관 사항임에 용도지구 세분 삭제
-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19. 9. 23 ~ 2019. 10. 15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도시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도시과

- 연 락 처 : 전화(033-560-2132), 팩스(033-560-2596)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도시과
- 홈페이지 : <https://www.jeongseon.go.kr>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8조의 제목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을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군수는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미 공고·열람한 군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재공고·열람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 외의 사항	2. ----- 제3항-----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② (생략)	제28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57조제1항제1의2다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 ----- ----- ----- ----- ----- -----.

1. ~ 3. (생 략)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 및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 설>

5. (생 략)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8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 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

1. ~ 15.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③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 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7. 12. 29.>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7. 4. 19., 2008. 1. 8., 2010. 4. 29., 2011. 3. 9., 2012. 1. 6., 2012. 4. 10., 2012. 10. 29., 2014. 3. 24., 2016. 5. 17., 2016. 6. 30., 2016. 8. 11., 2017. 12. 29., 2019. 8. 6.>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

확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경미한 도시·군관리계획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9. 8. 7.>

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도로모퉁이변을 조정하기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2.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른 변속차로, 차량출입구 또는 보행자출입구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변경

② 영 제25조제3항제6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

설을 말한다. <신설 2016. 2. 12., 2019. 8. 7.>

1.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③영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3. 14., 2009. 8. 19., 2011. 2. 25., 2012. 4. 13., 2013. 3. 23., 2015. 6. 4., 2016. 2. 12., 2016. 5. 26., 2019. 8. 7.>

1. 영 제25조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변경
2. 제1항제1호·제2호, 영 제25조제3항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항 제5호·제6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3. 영 제25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변경

④ 영 제25조제4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7. 4. 17., 2008. 3. 14., 2011. 2. 25., 2013. 3. 23., 2016. 2. 12., 2016. 5. 26., 2019. 8. 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 설치
2. 영 제45조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제목개정 2012. 4. 13.]

정선군 공고 제2019-1038호

정선군 고령운전자등 교통사고 예방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고령운전자등 교통사고 예방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24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 가.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유도로 교통사고 빈도를 줄여 인적, 물적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함.
- 나. 돌발상황 시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 안 제3조
- 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 안 제4조
- 라. 교통안전 교육 : 안 제5조
- 마. 교통사고 예방 지원 : 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기간 : 2019. 9. 24. ~ 10. 1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 및 문의처: 정선군청 안전과

- 주소: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안전과
- 전화: 033-560-2512
- 팩스: 033-560-2174
- 이메일: kgt1560@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고령운전자등 교통사고 예방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고령운전자등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와 장애인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정선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정선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및 장애인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 및 장애인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통사고 예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 및 장애인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경찰청장은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라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조건을 새로 붙이거나 바꿀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8.]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8. 3. 27., 2018. 12. 24.>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자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2.>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자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본호신설 2018.11.12.]